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안 제29조)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함

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입력기한 규정(안 제27조)

관리주체가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함

라. 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37조)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함

마.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실시대상 조정(안 제31조)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함

바.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7조, 별표 13)

법령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함

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사업 위탁범위 확대(안 제6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확대함

아. 조항 제목의 수정(안 제60조)

제60조 조항의 제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서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으로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은 제9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법 제73조제1항”을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라목 중 “경우”를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간

히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운반구와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로프, 벨트, 체인 및 그 부속품 등이 추락된 경우

제38조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승강기번호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6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2019년 7월 1일”을 각각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 제2항,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도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8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한

다.

별표 11 비고 제6호 중 “정기검사”를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4항 제1호				
---	---------------	--	--	--	--

별표 13 제2호에 너목1)부터 너목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		3만원	6만원	9만원
2) 4개월 초과 5개월 미만		5만원	10만원	15만원
3) 5개월 초과 6개월 미만		10만원	20만원	50만원

별표 13 제2호 위반행위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 제14호				
--	----------------	--	--	--	--

별표 13 제2호에 버목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별표 13 제2호에 버목1)가) 및 버목1)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20일 미만인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
나) 지연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별표 13 제2호에 버목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 제24조 제6항부터 제9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④ (생략)	제15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과징금납부의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⑤ (생략)
<신설>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
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기
관”이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
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
기관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
회 이내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신 설>

<신 설>

<신 설>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 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생략)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
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10일

-----.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
장)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
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고장

가. ~ 다. (생략)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
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9항-----
-----.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항-----
-----.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고장으로서 이용
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마.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제60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 ④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운반구와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로프, 벨트, 체인 및 그 부속품 등이 추락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

--.

1. (현행과 같음)

2. -----

----- 제외하며,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
부장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
호·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
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
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
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
는 제외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② ~ ⑥ (생략)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
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
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규제의 재검토) -----

-----.

1. -----
----- 2022년 7
월 1일

2. -----
----- 2022년 7월 1일

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
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
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
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
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
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
략)

<신 설>

3. -----
----- 2022년 7월 1일

4. -----
----- 2022년 7
월 1일

5. -----
----- 2022년 7월 1일

6. -----
----- 2022년 7월 1일

7. -----
----- 2022년 7
월 1일

8. -----
----- 2022년 7월
1일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82조제1항, 제2항, 제3
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
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
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도 부과할 수 있
다.

<u><신 설></u>	③ 법 제8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 과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4295